

# 사설

## 지자체장의 탐진치

지방자치체 실시 2주년을 맞으면서 사찰의 수행환경이 더욱 쾌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선진국으로의 진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며 정신적인 산물인 사찰과의 마찰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 발전을 추구한다는 똑같은 목적일지라도 그 방법상 차이가 있다. 즉 지자체는 당장 경제적인 수입의 측면을 고려한 개발논리를 펴고 있는데 반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사찰의 입장이 다른 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개발에 대한 행정적 관점에 차이를 보여 사찰 중무형 정도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최근 갈등과 대립으로 첨예화된 백양사와 장성군, 그리고 마이산 탐사와 진안군이다. 그밖에도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심곡사와 평택시, 봉영사와 남양주군, 금산사와 김제군 등 줄줄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사찰이 반드시 포함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개발논리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행환경개선 실상까지 포함하면 상당부분에 이른다.

실제 조계종은 20일 교계에서는 최초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20여개 사찰 주지스님들의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으로 종단과 사찰이 연대해 지자체 및 공원관리공단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찰훼손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강도가 심화된 백양사와 장성군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인을 모두 안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서 결의한 지원사업인 남골담 건설에 역행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장성군의 이같은 태도에 남골담 건립을 추진코자 했던 백양사는 어떠한 행정체계

를 따라야 할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군수는 개인 모델의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찰당을 사용하고 있고, 절앞에 관정을 설치하려고 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적 위력을 악용하고 있다. 종합하면 행정체계의 모순과 권력의 진(噴)과 욕망의 탐(貪) 그리고 진리에 눈먼 어리석음(痴)까지도 포함된 사건이다. 이 사안은 불교계와 국민 나아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경륜과 지모도 없으면서 수익사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찾아지고 있다. 여기에 사찰환경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도전에 전혀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턱없는 개발논리로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취지에 동감하고 의지는 있으나, 손발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수를 기약할 수 없다. 동국대 승가대 위덕대 등 종립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 사찰은 지역활동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도록 관심과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만행(萬行)으로 펼쳐야 한다.

백양사 문제는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종단차원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실천 불교승가회 등 교계 단체들이 정치권을 찾아 호소하고 있다. 또 전남도지사도 중재에 나서 장성군수에게 백양사에 사과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체 실시 2주년이 지난 마당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문화행정을 다시 일깨우는 바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더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환경이 조성되기를 촉구한다.

# 열린마당

## 고도보존특별법

경마장·골프장, 고층아파트의 건립 등 개발우선적 도시 행정으로 천년 고도 경주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고도 경주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문화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도보존특별법'만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고도보존특별법'의 필요성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그리고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국가차원 문화유적보존 강화 절실

### 장충식(동국대 교수·고고미술사)

경주는 경주다큐아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경마장과 골프장이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것은 아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개발요구만 추구하다보면 경주는 망한다. 경주와 같은 고도가 우리나라에 또 있는가. 경주는 보존함으로써 개발한다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경주시민들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수십년 동안 나름대로 피해를 입어와 개발관련 공청회에 가면 주민들은 문화재보존에 신경증적 알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다. 또 발굴 전문가와 예산부족으로 학술발굴은 드물고 각종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을 수습하는 수습발굴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발굴은 초상기

발굴에 불과하니 문화재보존이란 말은 구두선(口頭禪)과 다를바 없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역사도시로서의 경주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근원적인 문화재보존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경주는 문화유적분포도 작성을 포함하는 총체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행령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는 인도의 델리와 뉴델리처럼 구(舊) 도심과 역사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로 나눠 개발해 나가야 한다. 신도시개발에서 나온 이익금은 유적보존에 환원하여 역사도시로서의 경주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유적 보호-도시개발 서로 조화롭게

### 오세탁(충북대 명예교수·法博)

2년전,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한창일 때 우리나라 역사, 고고학관계 16개 학술단체들이 경주 문화재보존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낸 일이 있다. 그 건의서에서 '고도보존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고도보존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가까운 일본의 고도보존법(원래 이름은 '고도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일본의 나리나 가마쿠라 같은 곳과 우리나라의 경주, 부여는 그 입지 환경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도시풍토의 보존은 점(點)에서부터 면(面)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만으로 옛시가지 정치·문화 중심지의 방대한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란 역부족이다. 고도보존법은 문화재보호법이나 도시계획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겠지만 상호간의 조화가 있어야 하며 안전성은 문화재보호법과 통합돼야 바람직하다.

고도보존법에서는 역사적 풍토보존지구의 지정이나 각종 규제에 있어 적법절차를 엄격히 하되 심의기관을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좋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이 합리적이여야 한다. 또한 역사적풍토보존이 관광지화(觀光地化)로만 끌려서는 안되고 '고도보존'의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 현지 주민의 현실생활과 보존간의 조정이 있어야 주민들의 협조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정비에 대한 보조율의 확대든가 심의기구에서의 주민참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채원의 제공이나 보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규제는 일차적으로 행정지도에 의하도록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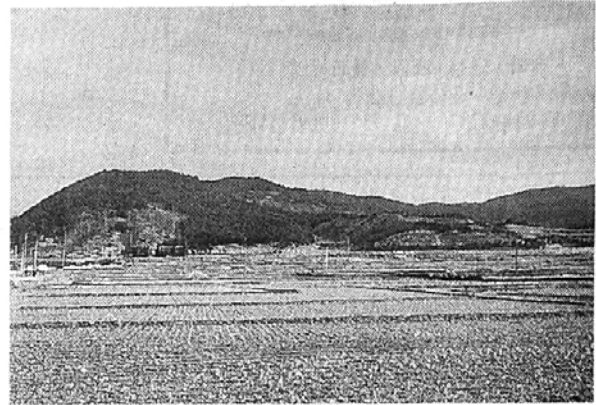
## 경주시 꾸준히 작업...재원 확보 '걸림돌'

### 서용봉(경주시 문화과 과장)

경주시는 지난 91년 이후 정부에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 내용들은 △보존특별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의 지정 △지정지역내 주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혜택 △고도경주개발 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이다. 지난 2월 경주 경실련도 전문 24개조의 고도보존특별법 시안을 작성했다. 재원조달 등 문제가 많아 정부부처간의 의견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문화재 발굴 보존과 전

문인력 채용, 그리고 8개의 국립공원 보존 등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더욱이 고도를 경주에만 국한시키지 않을 경우 비용은 훨씬 커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역부족이다.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지자체로서는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고속철도경주노선 결정과정에서 보듯이 개발과 보존간의 갈등은 끝없이 전개될 것이다. 경주시는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안을 마련, 올해내로 정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안에서는 관광복권의 발행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이다.



수많은 유물·유적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인 경주.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주 남산 전경.

### 고도보존 선진사례

선진국에서는 문화재 보호가 언제나 개발보다 앞섰다. 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역사이며, 그 민족의 위상은 문화유산의 질과 양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가꾸기에 따라 문화유산만큼 관광효과가 큰 분야는 없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기원전 8세기부터 지금까지 돌 한장 새로 교체하거나 복원하지 않은 채 고도의 모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한다. 일찍부터 '로마시보존법'을 마련한 로마에는 지하철이 거의 없다. 또 제한된 차량만이 로마시가를 통행할 수 있다. 공사나 차량진동으로 인한 귀중한 문화재의 파손이 우려되서다. 대신 별도의 신도시를 건설해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일본은 국민들의 높은 여운을 얻어 고도(古都) 개발에 따른 역사적 경관의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문화재보존법' 외에 '고도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66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며,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고도에 대해 '역사적 풍토 보존구역'을 설정, 해당 토지 이용에 대한 신고제 및 조연과 권고, 역사적 풍토보존계획 등을 입법화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지역은 '특별보존지구'로 따로 지정해 토지이용에 대한 허가, 해당토지 매입 등 고도의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교토시, 나라시, 가마쿠라시, 덴리시 등 6개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내

### 로마 교체·복원없이 옛모습 유지

### 일본 6개도시 '특별보존지구' 지정

### 영국 개발보상법등 문화재법 20종

각 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한 국무성 산하의 고도보존 담당 부서는 고도 개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성과 문화부서의 의견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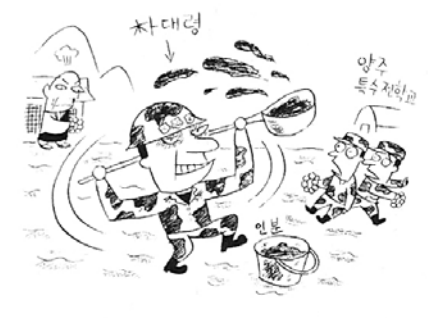
영국은 '고대 건축물과 유적보존법', '문화재법', '개발보상법' 등 20여개의 문화유산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마련, 사적 등 중요문화재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은 그 환경도 중시해 '중요유적지'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적보다 더 큰 개념으로 유적이 있는 역사도시 전체, 즉 우리의 경주, 부여와 같은 고도를 말한다.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헝가리,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미국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들의 문화보존법도 매우 체계적이며 적극적이다. 1906년 '고물법(유물법)'이 제정된 이래, 1969년 건설사업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된 '국가환경정책법'을 거쳐 1979년부터는 일정 금액을 매년 적립, 문화유산보호기금을 조성해 유물과 유적이 있는 개인소유의 땅을 구입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하고 있다. 또 땅주인이 유적이 있는 토지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의 미국이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높다.

윤기석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열록진 군복

# 고심사 영탑원

동남향의 이룩한 보금자리  
영가여, 불보살과 함께 평안하소서

## 부모를 위한, 가족을 위한 영가의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 영탑의 크기 : 높이 2.6m, 넓이 1.1m×1.1m ■ 봉안납골 : 가족유골 16구 봉안

영탑원인 헤더라는 일

- 장례 의식의 제반 절차와 화장 및 유골 의식 집전
- 영탑 봉안 및 49제 등 장례 후의 의식 봉행
- 상주와 조문객을 위한 정갈한 공간 제공
- 매일 조식기도 봉행
- 기제사와 백중·추석 등 주요 절기에 합동 추모기도 봉행
- 매장을 모셨으나 이장을 원하시는 경우 파묘, 화장, 운구, 영탑 봉안 등 제반 의식 집전

사 단 법 인 한국불교대원회 **고심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영덕리 111-1 ☎ (0446) 78-5408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국 2층 다원선영  
 ☎ (02) 701-6456~7 (02) 701-5374~5 FAX: (02) 3272-1389